

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4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이영실, 김경훈, 김성준,  
김영철, 김용일, 김재진,  
김형재, 남창진, 민병주,  
박강산, 박영한, 박춘선,  
서준오, 유정인, 이병도,  
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  
한·신 의원(1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.
-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, 환경교육의 정의에 어린이집을 명확히 명시하여 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의2(정의) 규정을 신설하여, “환경교육” 및 “학교 등”에 관하여 정의함.
- 나. 조례 제6조의 “학교환경교육의 지원”을 “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”으로 수정하고, 조례 전반에서 “학교”를 “학교 등”으로 수정함.
- 다. 그 밖에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본문 및 별지서식에서 이에 관한 인용조문을 수정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교육”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
  -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제3조의 제목 “(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)”을 “(서울특별시환경교육계획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장은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5조제4항”을 “시장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”으로, “지역환경교육계획”을 “서울특별시환경교육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

3호 중 “학교”를 “학교 등의 환경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”을 “(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”를 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조의2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학교환경교육”을 “학교 등의 환경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학교환경교육”을 “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”으로 한다.

1.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
2.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학교”를 각각 “학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「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”를 “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다른 세부”를 “다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“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“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”을 “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 활성화 방안

4. ~ 7. (생략)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, 자치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교육분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6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학교 등의 환경교육 -----  
-----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) --  
-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-----  
----- . 이 경우 제1조의2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 
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  
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
3.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

4.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 
의 개발 및 보급

5. ~ 7. (생략)

8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  
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 등)

① 시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  
육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현하  
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  
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  
는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② (생략)

③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 
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2. (생략)

3. 지역의 민간단체, 구청, 학교,  
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 
교육지원·조정

4. (생략)

1.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  
한 사항

2.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  
육에 관한 사항

<삭제>

3. 학교 등의 환경교육 -----

4. ~ 6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  
지와 같음)

7. -----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  
육-----

제9조(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 등)

① ----- 학교 등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학교 등-----  
-----  
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④ (생략)

⑤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「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-----  
-----.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